

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

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5. 12. 11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장



- 건 명 :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
- 근 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자 등록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한국***에너지 부울경협동조합 [반0현]	810-87-01***	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**(범일동) [부산 사상구 사상로 ***번길 2-4(감전동)]	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결정 알림	○ 처분사유 - 비IT직무자 김*지에 대해 월급 선지급 없이 통장이체증명서를 위조하고 IT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 제출하여 지원금 10,984,200원 부정수급 - 허위 근로자 문*준에 대하여 IT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 1,900,000원 부정수급 ○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- 부정수급액의 500% 추가 징수 결정(제재부가금 64,421,000원) -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지급 제한	-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

4. 공고기간 : 2025. 12. 11. ~ 2025. 12. 25. 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무관 최은실(Tel 051-330-986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